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부승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관리하는 장비·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 현행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군수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군수품 중 ‘무기체계’ 및 관련 부품 납품업체는 모두 방위산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 해당하지만,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는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 해당함.

따라서 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방산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는 현재 고액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등을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국방력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둘째,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획득 역시 “방위사업 수행”에 해당됨에도, 현행 제20조에서는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업체 군수품 납품업체는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다만, 현행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모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 수정이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